##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종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824

발의연월일: 2020. 9. 11.

발 의 자:최종윤・이인영・김승남

인재근 · 양향자 · 기동민

조승래 · 오영화 · 서동용

박성준 · 양정숙 · 이용빈

허종식 의원(13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 만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음. 그러나, 경증의 시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문자를 인식하기 어려워 점자 여권 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장애 등급에 관계 없이 시각장애인이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 다만, 점자 여권의 사용이 해외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관계로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시각장애인 표시를 한일반여권과 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###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여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"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"를 "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이"로, "시각장애인용 점자 여권을 발급할수 있다"를 "시각장애인 표시를 한 일반여권 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여권을 발급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여권의 발급 신청) ① (생	제9조(여권의 발급 신청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외교부장관은 <u>「장애인복지</u>	②
법」 제2조제2항에 따라 제1급	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시
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	<u> 각장애인이</u>
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이 제1항	
에 따른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	
는 경우 <u>시각장애인용 점자 여</u>	시각장애인 표시를 한
권을 발급할 수 있다.	일반여권 또는 시각장애인용
	점자 여권을 발급하여야 한다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